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진선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047

발의연월일: 2024. 8. 21.

발 의 자:진선미·이학영·임오경

최기상 · 김영호 · 김문수

문정복 • 이기헌 • 이광희

조승래 · 강경숙 · 정준호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그 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,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 등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,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.

논문 표절 문제 등 연구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이 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않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「학술진흥법」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발생·검증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, 고등교육기관이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1항제13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. 「학술진흥법」 제15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발생・검증 및 조 치 결과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	제6조(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
정보 등) ① 고등교육을 실시	정보 등) ①
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	
보유・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	
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	
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학	
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	
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
1. ~ 12. (생 략)	1. ~ 1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3. 「학술진흥법」 제15조에
	따른 연구부정행위 발생・검
	증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
<u>13.</u> (생 략)	<u>14.</u> (현행 제13호와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